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사업

설계공모 지침서

2026. 07.

[목 차]

1. 총칙

1.1 공모의 목적	3
1.2 용어의 정의	3
1.3 사업 개요	3

2. 설계공모 개요

2.1 설계공모 방식	5
2.2 설계공모 응모자격	5
2.3 설계공모 추진일정	7
2.4 응모 참가신청 방식	7
2.5 현장설명회	8
2.6 질의 접수 및 회신	9
2.7 응모작품 제출	9

3. 제출도서 기준

3.1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11
3.2 제출도서 작성기준	11

4. 심사위원회 운영 및 작품심사

4.1 심사위원회 구성	15
4.2 심사위원회 개최	16
4.3 심사 진행 방식 및 기준	16
4.4 심사의 감점 및 실격 기준	19
4.5 심사 결과 발표 및 보상	20
4.6 저작권 및 기타사항	21

5. 설계지침

5.1 설계 기본방향	25
-------------------	----

5.2 대지현황	25
5.3 세부 시설 면적기준	38
5.4 건축계획의 주안점	39
5.5 기타 유의 사항	41

6. 별지 서식 목록

제 1 장 총 칙

1.1 공모의 목적

- 가. 장례식장 이용자 수 증가 추세로 분향실 3실을 추가 확충하여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품격있는 디자인과 현대적인 장례 문화 공간을 구축
- 다. 합리적인 구조, 설비 시스템, 외관, 인테리어 등 지속가능한 설계로 안정적인 장례 시설 확충하고자 함

1.2 용어의 정의

- 가. ‘설계공모’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 및 절차로 해당 부지에 입체적인 건축구상, 프로그램 간 효율적인 공유 및 연계방안 구축 등을 위하여 최적의 계획을 제시한 응모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 나. ‘응모자’ 및 ‘응모작’은 본 설계공모 지침 및 공고문에 의거 공모작 작품을 제출하는 자와 그 작품을 말한다.
- 다. ‘당선자’ 및 ‘당선작’은 심사결과 최다 득표 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응모자와 응모자 제출작품을 의미하고 ‘기타 입상자 및 기타 입상작’은 차순위의 응모자와 응모자의 제출작품을 말한다.

1.3 사업 개요

- 가. 공 모 명 :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사업 건축설계공모
- 나. 부지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동 85-1 (김천의료원 부지 내)
- 다. 규 모
 - 1) 대지면적 : 10,962.0 m²
 - 2) 기존C동 연면적 : 2,994.0 m² (지하1층, 지상4층)
증축예정 바닥면적 : 839.15 m² (추정, 옥탑포함)
 - 3) 주요시설 : 장례식장, 의사숙소, 주차장 등
- 라. 용 도 : 의료시설(종합병원)- 장례식장
- 마. 공 사 비 : 4,600,000,000원 (VAT포함)
※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설 계 비 : 200,000,000원 (VAT포함)

- ※ 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비, 각종 심의 및 사후설계관리업무 용역비, 인허가 접수수수료, 손해배상보증보험증권비용 등 포함
- ※ 설계비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시설 전체 연면적이 늘어나는 경우, 발주자와 설계자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공휴일 포함, 보건복지부 심의기간 제외)

- ※ 각종 심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일수에서 제외 또는 과업 정지 가능

아. 용역범위

- 1)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계획, 중간, 실시설계
- 2) 건축협의를, 건축허가, 해체허가(증축시 발생하는 부분 해체 관련이며, 해체감리는 제외)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설계업무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제반업무 등 일체 포함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안전성 검토(해당시) 등)
- 3) 사업에 필요한 각종 협의, 심의(보건복지부 의료시설관련, 해체심의, 건축심의(해당시)), 설명회 등 자료작성 및 보고
- 4) 사후 설계관리업무관련 공사 준공 완료 시까지 발주, 시공, 준공단계 설계 지원
- 5) 증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 일부 해체시 해체 심의, 인허가용역 일체(단, 해체감리 별도 발주)
- 6) 사전 주변 및 건축물 현황조사 및 기존 도서 검토 업무
- 7) 지반 지질조사: 대지의 현황 및 지반조사를 적정 위치에서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조사를 위한 장비 진입 및 제반 인·허가 등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8) 7)외 기존 구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비파괴, 부분파괴 검사, 지열시험천공 등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검사로 지반조사가 불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한다.

제 2 장 설계공모 개요

2.1 설계공모 방식

○ 일반설계공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름

2.2 설계공모 응모자격

가. 설계공모의 응모자(공동응모자 포함)는 다음 ‘가’항 및 ‘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2)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따르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위반 시 공모참여 및 보상대상에서 제외)

나. 위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응모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2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다. 단, 구성원별 계약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의 대표자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1인)로 선정하여야 한다.

※ 수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없이 작품을 제출할 경우 무효처리 한다.

※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고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며,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서식7]과 공동응모협정서[서식4][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운영요령)]를 첨부한다.

※ 설계공모 지침서상의 의무 및 권리행사는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속하며,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

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6조(등록)에 따라 발주자가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한 후에 현장설명회 참가와 설계공모 응모 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

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공동응모자도 동일하게 적용)

라. 작품제출 이후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 할 수 없다.

마.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설계용역 계약 체결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의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단, 당선자가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

※ 단,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바. 해당 사업관련 운영위원, 심사위원 및 기타 공모 관계자는 참가할 수 없다.

사. 당선작 발표 후 참가자격 기준 위반(실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한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한다. 기타 입선작의 경우에도 입상 무효 및 상금을 회수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아.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2.3 설계공모 추진일정

구 분	공모일정(예정)	비 고
설계공모 공고	2026. 07. 08.	나라장터 공지
응모 참가등록	2026. 07. 15.	시간 : 08:30 ~ 14:30분 (12:30~13:30 제외) 방법 : 직접 방문(우편 등 불가) 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동 85-1 김천의료원 시설관리부 담당자 : 이상옥, 054-429-8122,
현장설명회	2026. 07. 15.	시간 : 15:00 ~ 16:00 장소 : 김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 3층 소회의실
질의서 및 기피신청서 접수	2026. 07. 17.	시간 : 08:30 ~ 17:30까지 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제출 후 유선확인) 장소 : 김천의료원 시설관리부
질의 회신	2026. 07. 24.	김천의료원 홈페이지 등록
작품 접수마감	2026. 08. 21.	시간 : 08:30 ~ 17:30분 (12:30~13:30 제외) 방법 : 직접 방문(우편 등 불가) 장소 : 김천의료원 시설관리부
발주처 기술검토	2026.08.22.~27.	제출 공모안의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설계공모안 심사	2026. 08. 28.	시간 : 14:00 ~ 장소 : 김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 3층 대강당
심사결과 발표	2026. 08. 31.	김천의료원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제출도서 반환	2026. 09. 07.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기간이 지난 후 발주처에서 폐기 예정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김천의료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일정 미확인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다.

2.4 응모 참가신청 방식

가. 일 시 : '2.3 설계공모 추진일정' 내용 참조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FAX, E-mail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가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다. 장 소 : 김천의료원 시설관리부

라. 참가신청 시 제출 서류

- 1) 건축설계공모 응모 신청서 1부 [서식1](접수번호 및 접수인은 공란 제출)
- 2)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3-1]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 3)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3-2] 및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4] (공동응모 시)
- 4) 공정심사 이행 서약서 1부 [서식2], 보안각서[서식14] (모든 참여업체 작성 제출)
- 5) 위임장[서식5]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 6) 사용인감계[서식6]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각 1부
- 7)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서식7]
- 8)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외국건축사 참가 시,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
- 9)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필증(확인증) 사본 1부
- 10)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11) 행정처분사실조회서(건축사협회 또는 공인기관 발급) 1부(모든 참여업체 제출)
※ 외국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 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다.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대표자 인장 날인)
※ 등록기간 내 정보 변경은 가능하며, 등록기간 만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 공동 응모인 경우 상기 자격증 및 업무신고필증 등 해당 서류 전부를 각각 제출
※ 기한 내 상기의 제출 서류 미접수한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

마. 자료제공

- 1) 본 공모에 필요한 참고자료(현황측량자료, 지반조사자료, 수치지형도)는 참가업체에 한하여 이메일로 제공한다.
- 2) 응모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각종 규정 및 양식(설계지침서 등)에 따라 설계공모 응모작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5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3 설계공모 추진일정' 내용 참조

나. 장 소 : '2.3 설계공모 추진일정' 내용 참조

다. 참석대상 : 응모 참가등록한 자

※ 응모자별 3인 이내, 공동응모의 경우 1개사 이상 현장설명회 참가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 참가업체 대표자 -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 위임장[서식5]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

마. 내 용 : 설계공모 지침의 주요내용 및 사업부지 조건 등 설명

※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16:00 이후 참석한 응모 참가등록자는 응모작 접수 불가(일정 및 장소 변경 시에는 개별 통보)

2.6 질의 접수 및 회신

가. 질의접수 기한 : ‘2.3 설계공모 추진일정’ 내용 참조

나. 장 소 : ‘2.3 설계공모 추진일정’ 내용 참조

다. 질의방법 :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서식8](대표사 공문서 첨부)를 담당자에게
방문접수 또는 E-mail 송부

※ E-mail 송부 시 접수사실을 담당자에게 구두로 반드시 확인

라. 질의답변 게시일(예정) : ‘2.3 설계공모 추진일정’ 내용 참조

※ 게시일 변경 시 유선통보

※ 질의서에 대한 회신은 설계공모 참가자 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천의료원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또는 응모신청서상에 기입된 이메일로 송부예정이며, 공모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마. 유의사항

- 1)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답변내용은 설계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2) E-mail 접수 시 전송오류 등으로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질의자인적사항 누락, 질의 내용이 설계지침서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회신하지 않을 수 있다.
- 3) 질의서 접수는 명시된 일시까지만 유효하며, 질의자 회사명, 주소, 응모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4)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를 통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 5)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 6) 질의접수기간 이후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답변할 수 있으며 응모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한다.

- 7) 설계공모 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는 김천의료원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재하며, 공모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료 및 정보를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2.7 응모작품 제출

가. 일 시 : '2.3 설계공모 추진일정' 내용 참조

※ 지정된 시간 이외에는 공모안 접수를 받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할 것

나. 장 소 : '2.3 설계공모 추진일정' 내용 참조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라. 유의사항

- 1) 응모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 2) 응모작은 명시된 일시까지 제출 시 유효하며 건축설계공모 참여신청서의 공모안 접수증[서식9]의 절취 하단부위를 교부받아야 한다.
- 3) 설계공모 응모자는 1개의 응모작만 제출할 수 있다.
- 4) 접수된 응모작은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다.
- 5) 제출도서는 응모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 ※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 심사의 최종결정 시까지 전 기간 동안 적용된다.
- 6) 제출도서는 심사용(9부)과 보관용(1부)을 구분하여 각각 하나의 묶음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하고, 포장지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고 제출한다.
 - ※ 보관용 포장 안에 USB를 넣어 제출할 것
- 7) 응모작을 제출하고자 하는 응모자(업체)는 아래의 구비서류와 제출도서(설계도면), 증빙자료(저장매체)를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제출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
 - 가) 건축설계 공모 참여 신청서 1부 [서식9] (접수번호 및 접수인은 공란 제출)
 - 나) 발주청에서 배부한 응모 접수증
 - 다) 심사후 입상작 확인용[서식10] 1부
 -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0] 1부

제 3 장 제출도서 기준

3.1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제출도서 작성기준 참고)
설계도판	A1 (841mm × 594mm)	2매/1set	
설계설명서	A3 (420mm × 297mm)	10부	심사용(9부)과 보관용(1부) 분리 제출
저장매체	USB	1개	-제출도서를 전자파일로 제출 -제출형식 : 설계도판(jpg) 설계설명서(pdf) 설계도면(dwg)
구비서류	-	각 1부	-건축설계 공모 참여 신청서[서식9] -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공정심사 이행 서약서

※ 제출 목록은 발주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김천의료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3.2 제출도서 작성기준

가. 일반사항

- 1) 응모작은 설계지침서를 준수하여 작성한다.
- 2)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여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 3)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 4) 제출도서에 표기되는 도면의 축척과 방위는 좌측상단에 정확히 표기한다.
- 5) 도면에서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 6) 제출한 제출물(접수공문 및 제출도서)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 7) 공모안 도판과 설계설명서 작성 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사용해야 한다. (필요 시 영문이나 한문 등 표기 가능)
- 8) 모든 제출도서(설계설명서 보관용 1부 제외)에는 응모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
- 9) 모든 제출도서에는 익명성 유지를 위해 발주자가 임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심사기간 동안 사용한다.(고유번호는 작품 제출이 완료된 이후 발주자 측에서 별도로 부여하며, 제출자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
- 10)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하고, 도서내 표현은 색상 제한 없이 자유롭게 표현 가능하다. 단, 렌더링 및 포토샵 등으로 맵핑을 한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1컷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간 상태의 칼라로 표현한다. 그리고 다이어그램 등의 설명을 위한 3D이미지는 추가할 수 있으나 렌더링 및 포토샵 등의 맵핑을 하지 않은 이미지만 사용 가능하다.

나. 설계도판

- 1) 규 격 : A1(가로594mm×세로 841mm) 크기의 도판 2매
- 2) 도판은 작품심사 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두께 10mm 백색 폼 보드에 백색 용지(백상지 또는 인화지)를 사용하여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한다. (장변이 세로방향)
- 3) 도판 도면 중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의 축적은 임의로 한다.
- 4) 도판의 글씨체는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되, 글씨 크기는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작성한다.
- 4) 도판의 표현은 색상 제한 없이 자유롭게 표현 가능하다. 단, 렌더링 및 포토샵 등으로 맵핑을 한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1컷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간 상태의 칼라로 표현한다. 그리고 다이어그램 등의 설명을 위한 3D이미지는 추가할 수 있으나 렌더링 및 포토샵 등의 맵핑을 하지 않은 이미지만 사용 가능하다.

5) 도판내용

가) 도판에는 공모명,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사업’ 만 표기하고 그 외의 어떠한 제목도 기입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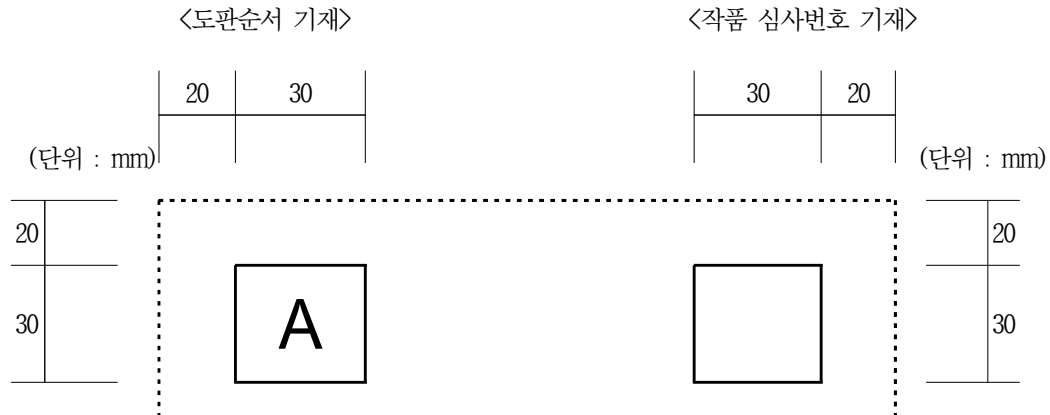
나) 도판 내용

- ① 조설계설명서의 내용들을 도판 규격 내에서 자유롭게 요약 배치한다.
- ② 설계개요에는 건축개요, 내·외부 마감재, 주요 설비, 구조공법 등 관련 사항을 작성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사항을 표기한다.
- ③ 지침서상 설계 주안점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한 제안을 충분히 표현한다.
- ⑤ 위 항목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응모자가 자유롭게 작성한다.

6) 도판 심사번호란 작성 기준

가) 도판의 순서를 알 수 있는 도판번호와 제출작의 심사번호(공란으로 제출) 박스를 아래 그림과 같이 도판에 표기한다.

나) 왼편 상단 박스는 도판순서를 영문(대문자 A,B)로 기재하고, 오른편 상단 박스는 공란(추후 작품 심사번호 기입)으로 작성한다.



※ 박스 선 두께는 1mm의 검정색으로 통일한다.

※ 도판순서 기재 박스의 글자는 서체 Arial Unicode MS, 크기 50, 색상 검정으로 통일한다.

다. 설계설명서

- 1) 규 격 : A3(가로420mm×세로297mm)로 작성하며, 테두리 없이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형으로 작성하고, 좌철 무선무철로 접착제 제본하여 제출한다.
- 2) 제 본 : 제본 시 스프링, 클립 등은 사용이 불가하며 접착제 제본만 가능하다.
- 3) 표 지 : [서식22]의 내용에 준수하여 작성한다.
- 4) 분 량 : 표지(앞/뒤 포함) 및 간지 포함 총 30매(단면인쇄) 이내로 작성한다.
- 5) 지 질 : 표지는 백색아트지(150g/m²), 용지는 백상지(100g/m²)로 작성한다.
- 6) 작성내용 :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페이지는 응모자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가) 표지 [서식22]

나) 목차

다) 설계개요 [서식15]

라) 각 층별 세부 실별 면적표 [서식16]

마) 설계 디자인 개념 및 대지현황 분석, 스페이스프로그램

바) 도판과 동일한 렌더링 및 포토샵 등으로 맵핑을 한 칼라 조감도 또는 투시도 1컷

사) 건축계획 및 도면

① 배치도, 평면도, 입면계획(2면이상), 단면계획(종, 횡)

② 인테리어 계획 관련 도면, 이미지(있을 경우)

아) 실내·외 마감재료

자) 건축구조계획- 지침서의 내용 표현

차) 동선계획(보행 및 차량) 및 주차계획

카) 옥외 편의시설 및 조경계획

타)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계획

파) 신공법 및 신소재 등의 적용 계획(관련 내용 적용일 경우에 한함)

하) BF 및 친환경 건축인증,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등의 관련 계획

거) 기타 특화 계획

너) 관계법규 검토서 [서식17]

더)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서식18]

7) 작성 유의사항

가) 설계설명서에 사용되는 글씨체(표지 제외)는 돋움체로 하고, 글씨 크기는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작성한다.

나) 설계설명서의 표현은 색상 제한 없이 자유롭게 표현 가능하다. 단, 렌더링 및 포토샵 등으로 맵핑을 한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도판과 동일한 1컷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이어그램 등의 설명을 위한 3D이미지는 추가할 수 있으나 렌더링 및 포토샵 등의 맵핑을 하지 않은 이미지만 사용 가능하다.

다) 매수 번호표기는 쪽수 산정이 시작되는 페이지부터 1로 표기하며, 오른쪽 아래에 표기한다.

라) 제출부수 10부 중 보관용 1부는 표지에만 건축사사무소명(공동응모일 경우는 대표회사 기재)을 기재하고, 심사용 9부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라. USB 저장 내용

1) 설계도판 (파일형식 : JPG)

2) 설계설명서 (파일형식 : PDF)

※ 표지에 업체명 표기가 없는 심사용 설계설명서 저장

3) 평면도 (파일형식 : DWG)

※ 시설면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캐드도면에 ‘면적선’이라는 이름의 레이어로 면적 산정선을 표기

제 4 장 심사위원회 운영 및 작품심사

4.1 심사위원회 구성

가. 심사위원회 선정

- 1)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계획·설계분야 등 전문가 7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명단(예시)은 다음과 같다.

연번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1	계획·설계	여준기	경운대학교	
2	계획·설계	윤현철	경북대학교	
3	계획·설계	조윤	명도 건축사사무소	
4	구조	강형수	(주)강구조안전기술	
5	시공	박주석	(주)정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예비	계획·설계	이성근	계명대학교	
예비	환경설비	류성룡	금오공과대학교	

- 2)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이 제척, 회피 등의 사정으로 불참 시 예비 심사위원으로 대체한다.

나. 심사위원 제척

- 1) 응모자는 심사위원이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에 의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전일 제척신청을 하여야 한다.
 -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가 되는 경우
 -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심사대상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2) 응모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기피신청서[서식21]와 근거자료를 발주자에게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위 1)항 각호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다. 심사위원장 선정

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라.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되며, 선정된 심사위원 중 기피 사유 등이 발생하여 제척된 자를 제외하고 소요인원 수(5인)의 과반수 이상 출석 시 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 출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심사위원회 개최일 변경 시 별도 공지)

2) 작품선정을 위한 논의는 심사위원회 의결로서 비공개로 진행하되 심사내용은 녹화 또는 녹음 할 수 있다.

3) 작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는다.

4)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2 심사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3 설계공모 추진일정’ 내용 참조

나. 장 소 : ‘2.3 설계공모 추진일정’ 내용 참조

다. 심사대상 : 제출된 응모작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것

※ 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은 발주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여업체에 별도 통보한다.

4.3 심사 진행 방식 및 기준

가. 심사 진행 순서

1) 심사는 ‘발주자 사전도서검토 의견제출(실격사항 및 지침위반사항 등)에 따른 내용의결’, ‘작품토론 및 심사평가’, ‘순위결정’,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심사결과 발표 및 공개’ 순서로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참고로 하고, 아래의 평가주안점을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2) 심사위원회 평가주안점

평가항목	세부사항 및 주안점	중요도
배치 계획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및 차량 접근의 적절성	10%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기존 건축물,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움 ○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고려한 외관이미지 ○ 입면 디자인 계획의 미적 우수성, 경제성, 합리성 ○ 재료 계획의 적정성	30%
공간 계획	○ 미래지향적 공간 프로그램 및 인테리어 방향성 제시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정성 및 연계방안 ○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편의성 ○ 시설 배치, 동선, 면적 등의 타당성 ○ 해당 공간의 창의성 및 적합성 ○ 현장조사를 통해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건축계획에 반영	30%
기술 계획	○ 안전하고 경제적,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설비계획 ○ 수직 연결 증축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 건축물은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서,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에너지 절약형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30%

나. 발주자 사전도서검토 의견제출

- 1) 심사 전 발주자는 설계공모 응모자의 응모작에 대한 자체 기술위원을 통해 실격 사항 및 지침위반사항을 검토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해당 응모자의 최종 확인을 거친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 2) 발주자는 공모안 평가사유서[서식19]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세부사항을 설명한다.
- 3) 심사위원회는 상정된 공모안 평가사유서 내용 검토 후 최종 심사 결과에 적용 여

부에 대해 의결한다.

다. 심사평가

- 1) 평가방식은 전체 응모작을 대상으로 투표제(토론방식)를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 기준은 상기의 ‘평가주안점’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및 「설계공모 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를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3) 투표방법

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차수)별로 투표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 ① 1차 투표: 다수 득표한 5개 공모안 선정
- ② 2차 투표: 다수 득표한 2개 공모안 선정
- ③ 3차 투표: 다수 득표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나)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각 단계별 투표 전 혹은 동일 득표자가 나온 경우 투표 기준에 대하여 심사위원간 토론한다.

다) 5개의 이상의 작품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위원당 총 3개의 작품에 한 표씩, 4개의 작품의 경우 총 2개의 작품에 한 표씩, 3개 이하의 작품의 경우 1개의 작품에 한 표씩 행사한다.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순서대로 등수를 정한다. 상기의 투표방식은 심사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으나, 한 사람이 한 작품에 2표를 행사할 수 없고 심사위원 본인이 행사하여야 하는 투표권의 개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라)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

라.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 1)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상작 중에서 최다 득표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 2) 기타 입상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 또는 투표를 거쳐 순위를 결정한다.
※ 선정방식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3) 설계공모 응모작품 수가 2개 미만이면 재공모를 시행한다. 단, 응모작이 부적격으로 판단된 경우(재공모 후에도 응모작품 수가 없는 경우 포함)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4) 설계심사 결과 응모작이 일정 수준에 미달 시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계약상 대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4 심사의 감점 및 실격 기준

가. 감점처리 기준 (감점 총합의 상한은 3점으로 제한)

위반항목	감점규정	단 위	비 고
1) 기준 쪽수 초과	-0.1점	페이지당	설계설명서
2) 기준 전체연면적 초과	-1.0점	초과시	초과시
3) 기준 개별 실면적 초과	-0.2점	±5% 초과시	초과된 실마다 감점 누적 적용
4) 제출 도서 누락 및 초과	-0.2점	도판당	설계도판
	-0.2점	부수당	설계설명서
5) 지질·규격·제본 미 준수	-0.2점	각 건당	설계도판
	-0.2점	각 건당	설계설명서
6) 제출물 작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0.2점	도판당	설계도판
	-0.2점	페이지당	설계설명서

나. 실격처리 기준

- 1) 설계공모 지침서 및 설계 과업지시서를 무시하고 설계하여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부지경계 임의조작, 공사비 과다설계 등)
- 2) 제출 도서에 참가자 인지가 가능하도록 업체명이나 기호 등을 표시 하는 등 익명성유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 3) 관련 법령이나 설계공모지침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어 대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및 기타 중대 위반사항이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 4)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5) 응모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6) 공동응모인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
- 7) 제출 마감시간 미준수한 경우

다. 감점 및 실격 적용 방법

- 1) 심사 이전에 개별적으로 발주처와 심사위원 측 관계자를 접촉하여 설계안에 관해

사전설명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실격처리한다.

※ 당선된 이후에도 사전설명 금지위반의 위반사항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검토 및 발주자의 판단으로 당선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보상금을 이미 수취한 입상자는 해당 보상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2) 본 심사 당일 심사 진행 종료까지 응모업체 관계자와 심사위원 간의 접촉 및 대화를 절대 불허하며 적발 시 발주자의 판단으로 실격처리가 가능하다.
- 3) 발주자가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감점 및 실격 기준 내용을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점 등의 불이익을 처분한다.
- 4) 감점 처리는 작품 심사 후 발주자가 대상작품과 감점사유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점여부를 결정하며, 감점 결정 사항은 평가결과에 합산된다.
- 5) 실격 처리는 심사위원회 구성 후 응모작 심사 전에 발주자가 실격사유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여부를 심의 결정하고 실격판정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6)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위원회에서 의견 차이로 합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나)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지침)

4.5 심사 결과 발표 및 보상

가. 심사결과 발표일 : ‘2.3 설계공모 추진일정’ 내용 참조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지)

나. 보상 및 대우

- 1) 당선작(1인) : 설계권에 대한 우선 협상권

가) 본 설계용역 계약관련 우선 협상 상대자로 결정하며, 당선자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발주자와 계약 협의 완료 시 설계용역권을 부여한다.

나)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당선자가 다음의 각호와 같이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용역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수령한 보상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 ①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 ② 당선작이 실격 또는 무효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③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의 여건변화로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 ④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기타 사유로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⑤ 설계용역 진행 시 설계공모 규정과 요구사항 등을 당선자가 거부하는 경우
- ⑥ 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 ⑦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계약 요구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상작

- 가) 응모작 작성비용 일부 보상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에 따른다.
- 나) 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구분하여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고 보상비를 지급한다.
- 다) 작품수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라) 개별통지 후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요청을 하지 않을 때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마) 기타 입상작에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당선작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선정한다.
- 바) 공동응모인 경우 대표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 사) 아래표는 기타 입상자 보상내역이며, 정확한 입상자 수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구 분		보상대상(예산 10,000,000원)			
응모작품수 (실격 제외)	보상대상수 (기타 입상자)	우수작	가작1	가작2	가작3
11개 이상	4개	4,000,000원	3,000,000원	2,000,000원	1,000,000원
6~10개	3개	4,000,000원	3,000,000원	2,000,000원	
4~5개	2개	4,000,000원	3,000,000원	-	
3개 이하	1개	3,300,000원	-	-	

※ 상기 보상 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것임

4.6 저작권 및 기타사항

가. 저작권

- 1) 작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당선작 및 입상작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용역권 및 기 수령 보상금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 2)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발주자는 별도 보상 및 협의 없이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의 작품을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홍보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해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공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동의서[서식20]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작품반환

- 1) 작품의 반환은 심사결과 발표일 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 2) 반환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발주자가 임의로 처리한다. 이러한 처리에 대해 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당선자의 의무

- 1) 발주자는 당선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당선자는 발주자의 계약 요구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 당선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단, 발주자의 사정으로 해당사업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 3)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후 설계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 및 설계공모 지침 위반사항 발생 시 발주자의 검토 하에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4)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사항과 발주자의 요구사항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5) 당선자는 설계진행과정별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한다.
- 6) 당선자는 이 지침서와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 설계하며, 이의 사항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 7) 당선자가 전기, 통신, 소방 등 분야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을 한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소방)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자, 그리고 구조, 토목, 기계, 조경 등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무소를 개설한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발주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로 한다.
- 8) 계약금액은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대가를 모두 포함하며,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

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인증,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당선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 등 발주처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업무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세금 및 수수료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9) 당선작 확정 후 발주자의 방침 변경 등의 사정에 의거 아래의 내용과 같이 업무범위를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계약 전 및 계약 후 계획설계단계에서의 업무내용 추가(설계비 상향 조정) 또는 축소(설계비 하향 조정)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변경 정산한다.

나) 계약 후 계획설계 확정 보고 후,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에서의 업무내용의 추가(설계비 상향 조정) 또는 축소(설계비 하향 조정)로 인한 계약변경 정산을 하거나, 시설면적 또는 요구조건의 추가 및 축소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비 상향 조정하여 계약변경 정산을 한다.

다) 위 ‘가’와 ‘나’ 항의 경우에서 설계완료 시 당초 기준 면적의 10% 이하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는 용역비를 정산하지 않는다.

라)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 사업취소에 따른 보상

1)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아래의 취소 시점에 따라 응모자에게 설계공모 취소에 대해 보상을 한다.

가) 설계공모 중인 경우(응모작 제출일까지) : 별도 보상없음

나) 응모작 제출일 익일부터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일) 전일 경우, 응모작 제출자에게 총 보상금(설계비의 10%)을 균등 지급하며, 총 보상금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에 따른다.

다) 당선작 선정 이후 설계용역 계약 전인 경우, 당선자와 입상자에게 보상기준의 상금을 지급하며 당선자와 입상자는 이의제기할 수 없다.

라) 설계용역 계약 후 사업이 취소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정산하되,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의 공정률에 따른다. 단, 실제 업무수행과 공정률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실제 업무수행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2)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사업이 재개될 경우, 발주자는 당선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기 지급된 보상금을 발주자에게 전액 반환 후 계약한다.

마. 기타 유의사항

- 1)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2)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자와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예상 외로 출품작이 많은 경우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설계공모 진행방식 등에 대해 본 지침서 내용과 다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응모자에게 변경 내용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
- 4)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 5 장 설계지침

5.1 설계 기본 방향

- 가.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시설과 공간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 나. 법령 상 적용기준을 준수하여 반영하고, 반드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공모가 되어야 한다.
- 다. 현장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기존 건축물 현황, 주변 입지조건 등을 분석 후 계획에 반영한다.
- 라.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 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마. 공공시설로서의 예술성 및 기능성을 갖추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제시한다. 단, 사업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 바. 수직증축을 고려하여 구조는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한다.

5.2 대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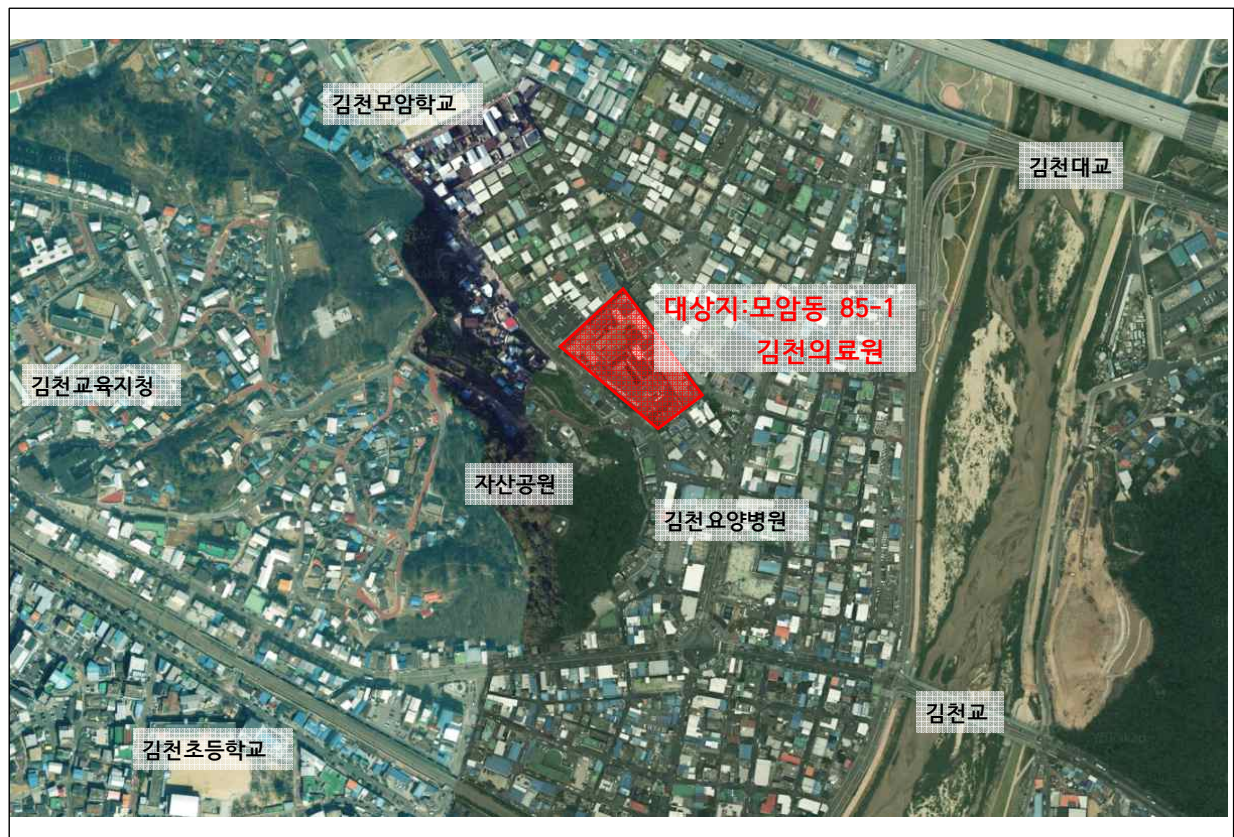
가. 사업부지 개요

- 1)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동 85-1 (김천의료원 부지 내)
- 2)지 목 : 대지
- 3)면 적 : 10,962.0 m²
- 4)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 5)도 로 : 중로2류(폭15~20m)(중로2-3)(저축), 소로3류(폭8m미만)(접합)
- 6)용 도 : 의료시설(종합병원)-장례식장, 의사숙소,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 7)법적 건폐율/용적률 : 60%이하/250%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 8)현재 건폐율/용적률 : 51.91% / 174.57% (임시사용승인반영)
- 9)현재 건축면적/전체연면적/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5,690.206m² / 22,255.093m² / 19,136.727m²
- 10)현재 부지 내 총 주차대수 : 189대

11) 토지이용 지적



나. 위치도





다. 증축예정지

1) 동선

- ① 현재 전면 15M 도로변에 의료원의 차량 및 보행자 주출입구와 장례식장의 보행자 주출입구가 면해 있으며, 북측 공영주차장과 동측 건강검진센터가 위치함. 전면도로에서 장례식장 주출입로 보행자의 접근이 가능함.
- ② 현재 북측 6M도로에서 직원차량 출입구와 서비스차량 출입구가 위치해 있음
- ③ 이용객의 주차는 의료원내 부설주차장과 추가 확보(예정) 인근 부설주차장(건강검진센터 주차장 등) 이용 가능함

라. 기존 시설 현황

1) 김천의료원 시설 현황

- 가) 해당 부지내 사업대상 C동과 종합병원 D동, 기계실 E동의 3개동이 위치하며, 인접 건강검진센터와 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음. 주차장 전용 건축물, 공개공

지, 조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 및 도로와의 경계선에서 대지내 공지 3M의 공지가 있음.

나) 전면 150M도로변에 의료원부지 주출입구와 장례식장의 보행자 주출입구가 면해 있으며, 북측 공영주차장(산후조리원 증축예정지)과 동측 건강건강센터가 위치함.

다) 지상 3층의 지붕슬라브 상부로 증축을 고려한 기둥 연장부가 있으나, 이 외 증축고려 구조 연장부분 없음 .

라) 해당 C동은 2005년에 1층 180.16㎡, 2층 192.67㎡부분 증축 함.

이후 2013년에 1층 안치실~사무실 구간과 2층 조문실 부분만 2003년 준공시 콘크리트골조를 유지하고, 부분철거 및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현재의 2,670.60㎡(지하1층,지상4층)을 사용승인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임.

라) C동 면적개요

구분	주요기능	실명	면적			비고
			현재	증축예정	계	
계			2,994.00	789.15	3,783.15	(옥탑제외)
옥상층	장례식장	계단실,승강기, 전기실,기계실	-	약 50	50.0	증축 장애인승강기설치
4층	장례식장	분향실 2실	231.60	569.08	800.68	증축 장애인승강기설치
	의사숙소	의사숙소 7실				
3층	장례식장	분향실 1실 + 1실	580.61	220.07	800.68	증축 장애인승강기설치
	의사숙소	의사숙소 7실				
2층	장례식장	분향실 2실	800.68		800.68	장애인승강기설치
	의사숙소	의사숙소 7실				
1층	장례식장	분향실 2실, 사무실 등	778.39		778.39	장애인승강기설치
	주차장	주차장 6대				
지하1층	장례식장	주방, 창고	602.72		602.72	일부 세부용도변경
	주차장	주차장 7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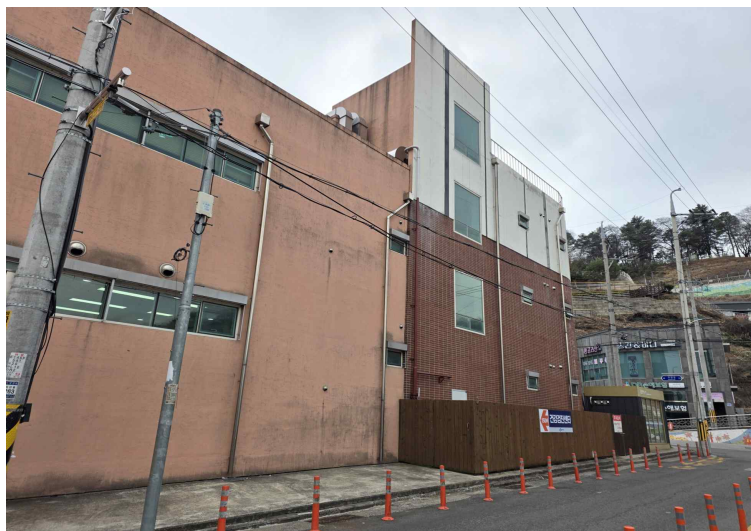
2) 대상부지 현장사진



장례식장 출입구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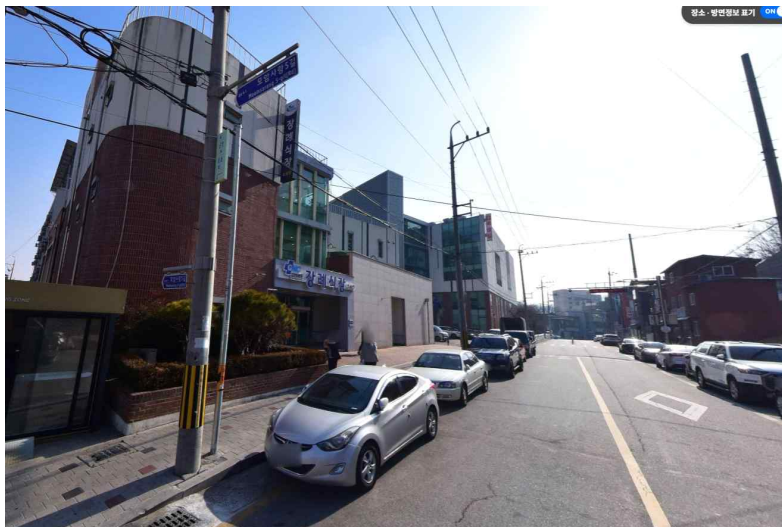
좌측면 코너



북서측 도로에서
바라본 대상건축물



의료원 본동 외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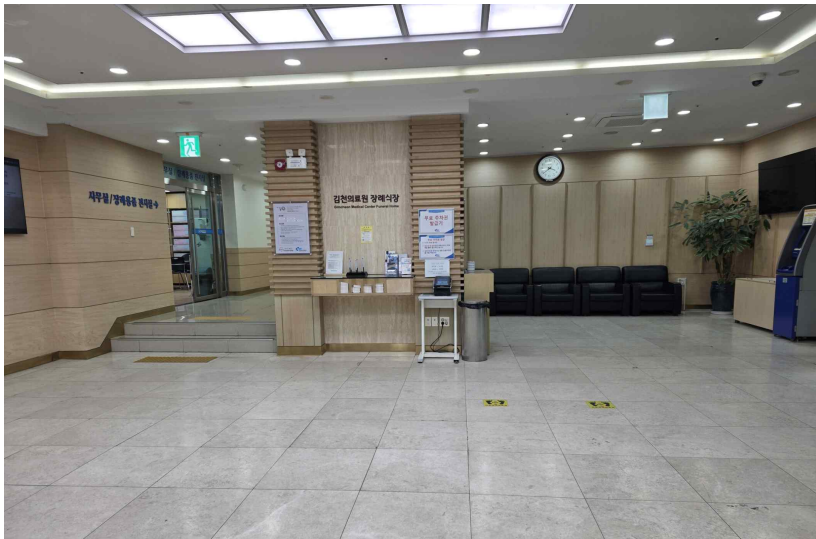
전면 15m도로에서
바라본 대상건축물



북서측 도로



1층 출입홀



1층 출입홀 우측 로비
(승강기 설치 고려)



지하1층 창고변경예정부분



‘A’ 부분
3층 증축예정



‘B’ 부분
3층 증축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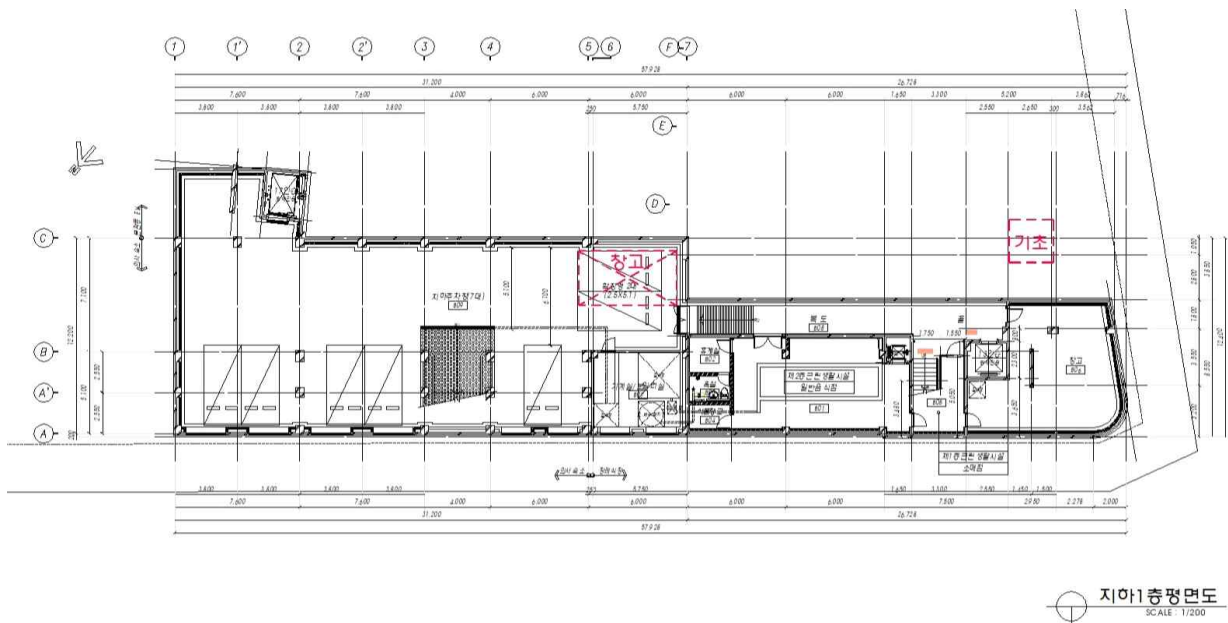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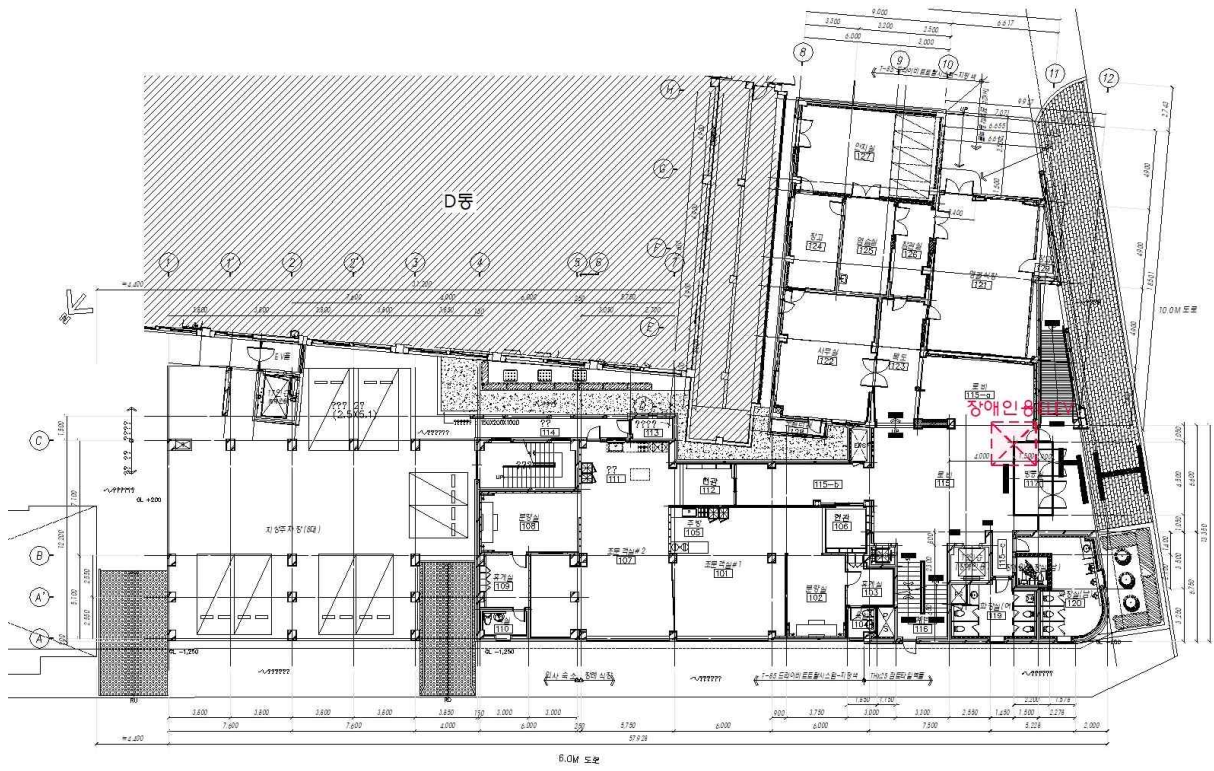
‘C’ 부분
4층 증축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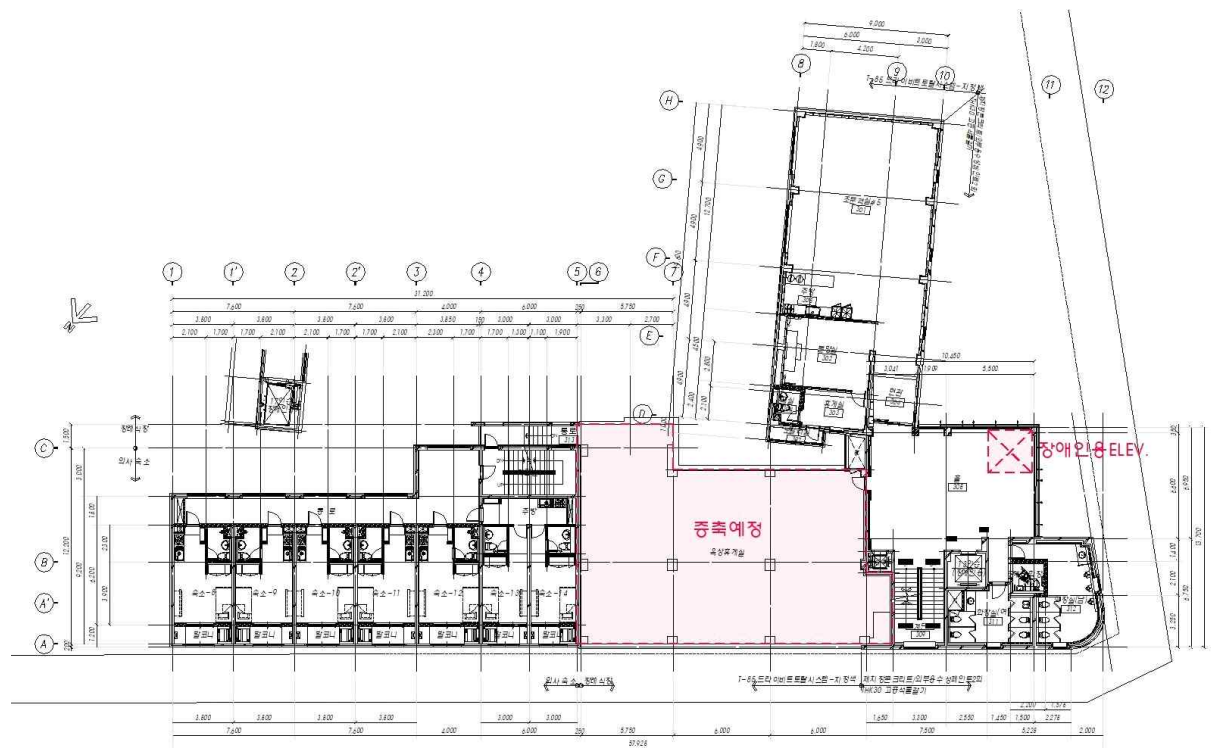
‘D’ 부분
4층 증축예정

3) 증축 예정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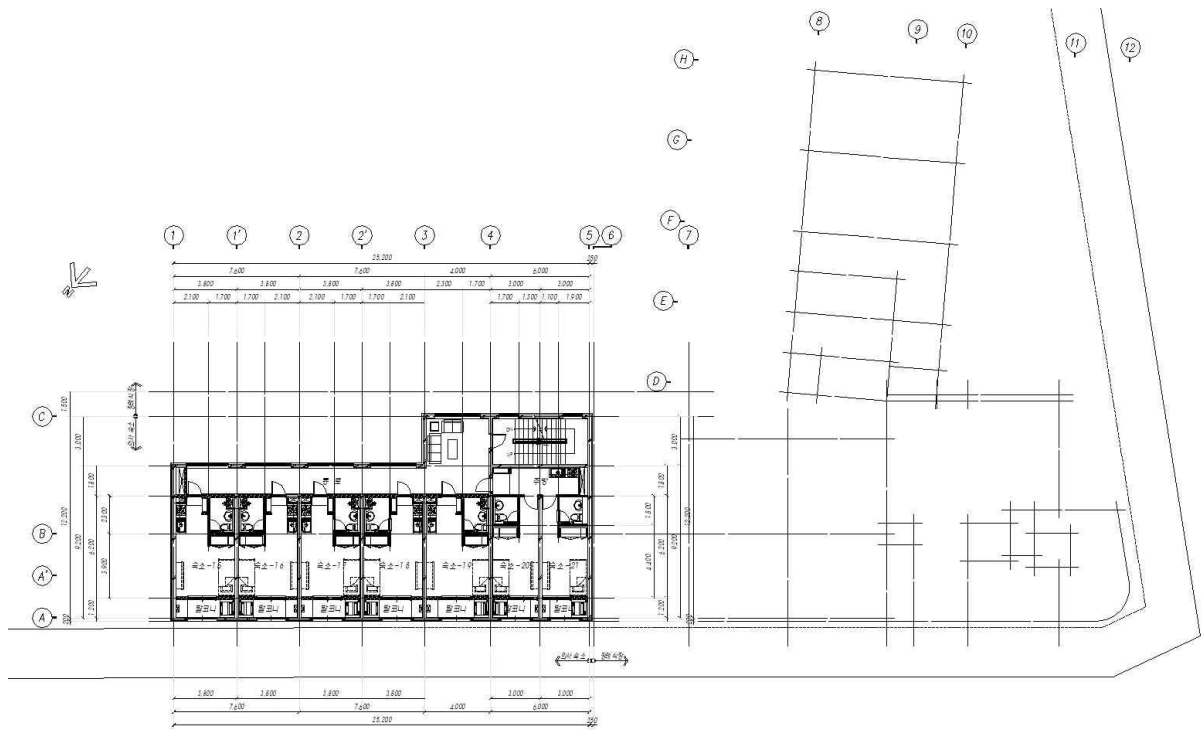




지상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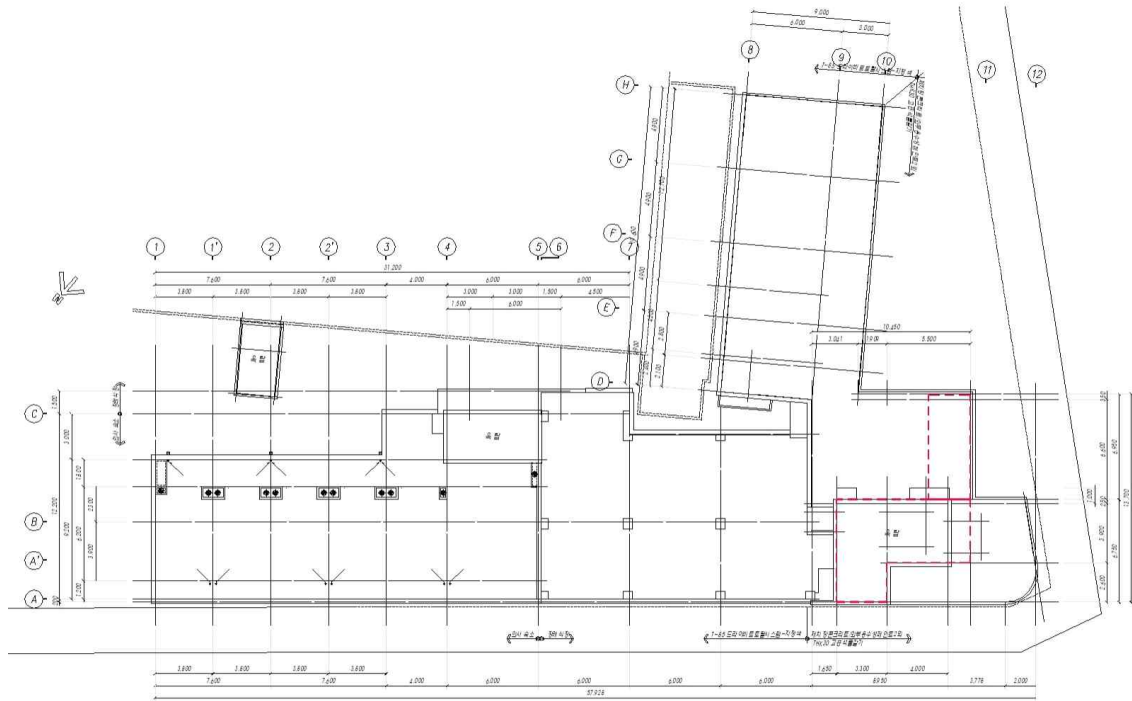
지상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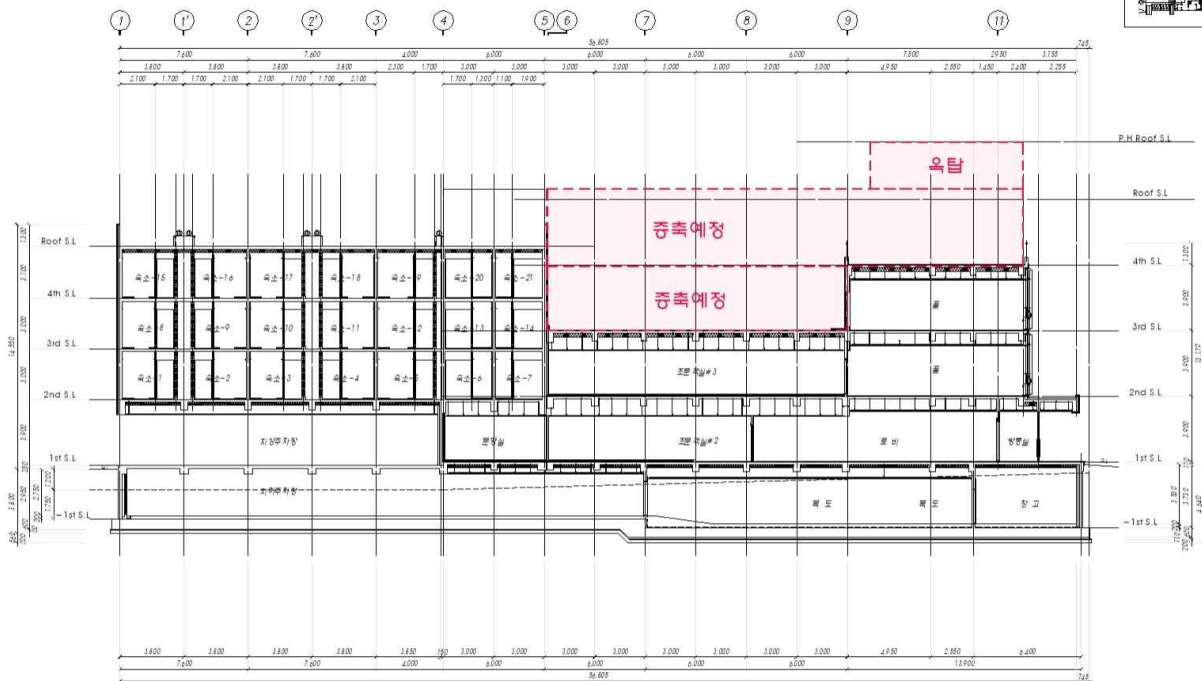
(의사숙소)
지상4층평면도



(장례식장)
지상4층평면도



옥탑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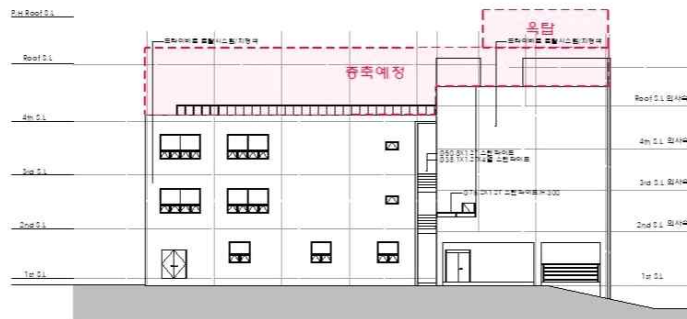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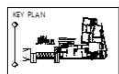


주단면도 - 1

• 드라이버트 마감부분: 단열재절거꾸 준물연재(단열재포함)마감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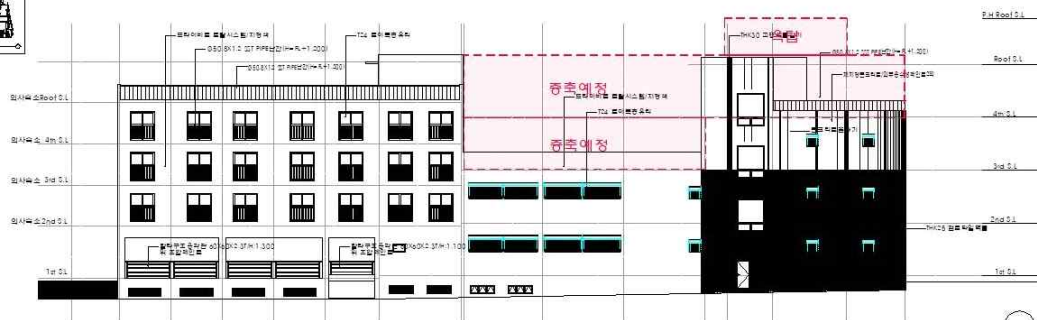


서측면도
A3 SCALE: 1/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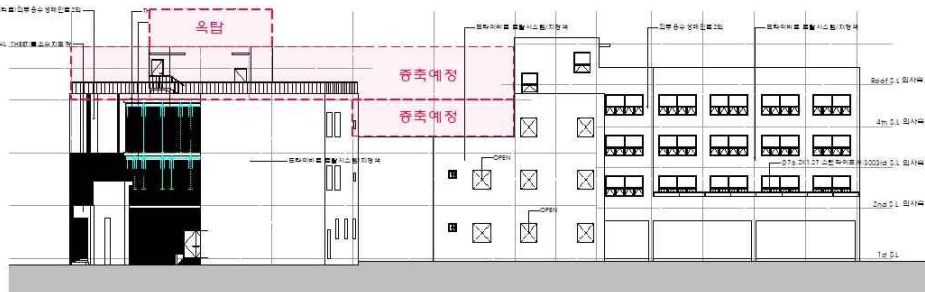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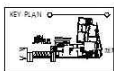


남측면도
A3 SCALE: 1/250

• 드라이버트 마감부분: 단열재절거꾸 준물연재(단열재포함)마감 변경



동측면도
A3 SCALE: 1/250



북측면도
A3 SCALE: 1/250

5.3 세부 시설 면적기준

층별	세부시설	면적(m ²)	산출기준 및 근거
지하주차장	주차장->창고 (세부용도변경)	20	*내부 냉장고 설치활용고려 *감소 주차대수 인근주차장에 확보할것
지상1층	장애인용승강기	8	*적정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기(기계실없는 형식) 설치(주출입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면 크게) *제시 평면상의 위치보다 적정 위치 제안 가능
2층	장애인용승강기	8	
3층	장애인용승강기	8	
	분향실 1실 조문객실 1실	증220.07	*욕실, 휴게실, 창고 등 부대시설포함 *공간 프로그램에 의한 기타 실 제안가능
4층	로비	증160.8	*장애인용승강기, 덤웨이터 *공용 로비 *공간 프로그램에 의한 기타 실 제안가능
	분향실 2실 조문객실 2실	증399.28	*욕실, 휴게실, 창고 등 부대시설포함 *공간 프로그램에 의한 기타 실 제안가능
	피난통로	증10.0	*직통계단 2개확보 위한 통로계획
옥상층 (5층)	계단실,승강기, 전기실,기계실	증50± 필요면적	*법규에 맞게 면적 산정, 필요할 경우 5층 고려 *옥상층에서 승강기 정차(시설관리상)
증축면적 합계		839.15±	*옥탑면적 포함
부대 시설	주차 장	인근 부설주차장	*10대 이상 확보

※ 상기 세부시설면적은 ±1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5.4 건축계획의 주안점

가. 배치계획 및 외부동선, 외부공간 계획

- 1) 부지에 접한 도로와 기존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등과 같은 상위계획 등 제반여건 및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 2) 신설 장애인용 승강기의 위치는 구조, 편리성, 동선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제안할 수 있다. .
- 3) 대지조건을 고려하여 주차장구역, 차량/보행자 진출입 구역 등 보행자가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안 할 수 있다.
- 4) 추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인근 부설주차장설치를 할 수 있으며, 인접 건강검진센터의 부설주차장 일부를 활용 할 수 있으며. 보다 적절한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나. 평면계획

- 1) 현대의 장례문화에 적합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미래지향적인 내부 공간 계획을 제안한다
- 2) 분향실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바닥난방 방식을 제안하고, 조문객실은 입식으로 할수 있으며, 이에 적절한 난방방식과 공간 계획을 제안한다
- 3) 세부시설에 대한 발주자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평면 구성을 한다.
- 4) 욕실, 휴게실 등의 고급화된 일부 실을 특화할 수 있고, 가변적인 공간 구성 등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선도형 공간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 5) A.V실,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설비를 위한 면적 배분을 하여 평면계획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6) 기존 덤웨이터, 기존 승강기는 4층까지 증설하고, 1층~5층까지 정차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되, 제시된 위치 외 적절한 위치를 제안할 수 있다, 승강기는 여건이 가능한 수용인원 최대크기로, 기계실 없는 형식으로 계획하고, 5층은 관리자 전용으로 한다. 또한, 기존과 신설 승강기는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반영한다.
- 7) 직통계단 2개소 설치 기준에 맞도록 기존 계단실과의 통로를 고려하되, 층고차이로 인한 높이 계획을 포함한다,
- 8) 실내공간 디자인에서도 한정된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표현한다. 인테리어 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홀 및 주요실은 투시도를 작성하고 재료 마감계획을 수립한다. 사업비 범위에 적절한 예산규모로 계획한다.

- 9) 추후 공사 중 인테리어 계획이 미비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용역 수행 시 인테리어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 10) 기계, 전기실 계획 시 옥상층 활용을 고려하며, 실외기, 장비반입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 11) 기계 및 전기실, 설비 관련 샤프트 적정위치 계획으로 배관 등의 길이를 단축시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다.

다. 입·단면 계획

- 1) 지역 거점 의료원 장례식장으로 장소성을 가지고 창의적이며 기존 건축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입면을 계획한다.
- 2) 제한된 공사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외관을 디자인한다.
- 3) 에너지 효율 및 유지관리, 내구성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내·외장 마감재를 사용한다.
- 4) 기존 드라이비트 외벽 마감재를 준불연으로 변경계획을 포함하되 경제성, 안전성이 우수하며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 5) 색상은 의장계획과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한다.
- 6) 지역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입면, 재료, 색채 계획하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마감재와 용도에 맞는 색채 선택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입면 위주의 디자인과 장식적인 디자인으로 인한 과도한 설계가 되지않도록 한다.

라. 구조 계획

- 1) 증축을 위한 기존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보강 계획 기존 구조검토서를 검토, 현장 확인하여 구조설계에 반영한다.
- 2) 증축후 기존과 증축부 전체의 구조적 안전성을 완벽히 확보하여야 하며, 잠재적 위험 요소를 검토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발주처에 요청하여야 하며, 계획에 필요한 조사, 검토는 계획 단계에서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 3)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수직증축에 적절한 구조적 내구성이 뛰어난 구조를 제안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하여 상세도, 공법 등 필요 부분을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에 표

현하여야 한다.

- 4) 시공성 경제성을 적극 고려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 5)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

- 1)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 2) 기존 가스보일러 바닥난방 설비를 전기 사용 방식으로 교체 및 증설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 3) 기존 G.H.P설비를 E.H.P로 교체 및 증설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 3) 전기, 통신, 소방, 설비 시스템은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발주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설비 시스템을 계획한다.
- 4) 건물의 내구성, 구조적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5)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대형공간 조성시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인 설계 및 공간 계획이 되도록 한다.
- 5)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으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공공부문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시행되므로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공법·재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건축물로 계획한다.
- 6)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저감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건물의 배치, 입면의 개구율, 자재의 선정 등을 적절히 고려한다.
 - 외벽 및 창호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방안을 적용한다.
 - 에너지절약 기기 및 시스템을 적용하여 전력 소비량을 최소화한다.

5.5 기타 유의 사항

- 가. 반드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공모가 되어야 한다.
- 나. 해당 사업 및 건축물과 관련된 법령들을 확인하여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다. 본 설계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할 경우 성립되고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한다.
- 라. 설계공모참가자는 본 설계공모지침서를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참가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마. 문의사항: 김천의료원 시설관리부 (Tel. 054-429-8122)

※ 각종 관련 서식은 별도 파일 첨부. 끝.